

EU의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8/99를 중심으로 –

I. 서 언

국내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환경문제’를 초국경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이를 쉽게 규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환경손해에 대한 ‘환경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올바른 환경정책을 통하여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야 한

다. 기본적으로는 높은 수준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사전예방의 원칙, 방지의 원칙, 근원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환경손해에 대한 ‘환경책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2004년 4월 21일 유럽의회/이사회가 “환경손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침 2004/35/EC”¹⁾을 채택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2003년 1월 27일 이사회가 “형사적 제재를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골격결정 2003/80/JHA (수정 전)²⁾”을 마련하였으나, 이 골격결정은

- 1) Directive 2004/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OJ 2004 L143/56). 이 지침은 Directive 2006/21(Directive 2006/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06 on the management of waste from extractive industries and amending Directive 2004/35/EC, OJ 2006 L102/15)에 의해 부속서 III에 13항 목이 추가됨으로써 부분 개정됨.
- 2)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3/80/JHA of 27 January 2003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criminal law(OJ 2003 L29/55).

2008년 11월 19일 유럽의회/이사회가 ‘수정된’ 관련 지침 2008/99/EC(수정 후)³⁾로 채택되었다. 기존 법령(골격결정 2003/80)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2005년에 이미 유럽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결에 의해 동 법령이 취소된 바 있다.⁴⁾ 이 사건은 이사회가 환경손해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다루는 책임지침을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사적 규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사법 영역을 침해하였다는 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형

사적 처벌에 관한 골격결정 2005/667”⁵⁾을 다룬 사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ECJ에 의해 확인되었다.⁶⁾ 이와 같이 EU의 3대 축의 하나였던 ‘사법 내무협력(Justice and Home Affairs: JHA)’ 분야는 회원국의 주권적 성질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EU가 ‘규칙(Regulations)’과 유사하게 전부구속력이 있는 ‘결정(Decisions)’이라고 하는 2차법령의 형태로 규율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와 유럽의회가 ECJ에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관련 법령(골격결정 2003/80)이 결국 취소된 것이다. 이는 환경손해에 대한 일반적 ‘환경책임’의 의무를 회원국들의 ‘형법의 조화’를 통해 형사

- 3) Directive 2008/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criminal law(OJ 2008 L328/28).
- 4) Case C-176/03, Commission v. Council, [2005] ECR I-7879: 환경보호가 EU의 기본적 정책과 활동의 영역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사회 골격결정 2003/80/JHA 제2조~제7조가 환경보호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했던 점은 환경책임의 ‘형사제재 강화’의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EU 회원국들의 형법체계와 일치할 수 있다. 더구나 동 골격결정 제5조 1항이 동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에게 형사적 처벌의 선택권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은 동 법령의 이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 골격결정 채택 전에 부결되긴 했으나 이미 ‘제안되었던’ 한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이사회가 골격결정 2003/80/JHA를 ‘편의적으로’ 채택하여 EU 회원국들을 강제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회의 입법행위는 TFEU 제192조와 TEU 제40조(구 TEU 제47조)의 환경보호에 대한 입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시된다. 결국 동 골격결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 2008/99/EC가 채택되었다.
- 5)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5/667/JHA of 12 July 2005 to strengthen the criminal-law framework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 against ship-source pollution(OJ 2005 L255/164).
- 6) Case C-440/05, Commission v. Council, [2007] ECR I-9097: ‘환경보호’가 EU의 주요 정책 영역 중의 하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TFEU 제11조(구 EC조약 제6조)에 의거하여 EU는 환경보호를 위해 EU 차원에서 일정한 입법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 이사회 골격결정 2005/667은 운송상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동 골격결정은 환경과 생물에 피해를 끼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균형 있는 적절한 형사 제재를 갖추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건에서 ECJ는 구체적인 ‘형사제재’나 ‘형사절차’는 EU의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절차들은 EU 각 회원국들의 관할사항이라고 보았다. 결국 동 사건은 EU의 환경보호를 위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정도)에 관한 EU 차원의 입법권한상의 제한을 명확히 한 사건으로, 오늘날 EU의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통합상의 한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EU가 아직은 국가연합 또는 국제기구적인 실체적 성질을 갖는 단계에 있고 완전한 연방국가로서의 통치구조를 완성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적 제재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EU의 형사적 규제에 있어서 형벌의 ‘종류’와 ‘범위(정도)’에 따라 EU의 지나친 개입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형사적 처벌’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2008/99/EC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EU의 환경책임에 대한 현재의 형사적 규제방식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II. EU 환경형법지침의 내용 분석

1. 입법 배경 및 취지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고되고 환경보호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이 인식됨에 따라 EU는 환경보호를 위한 선도적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 2008/99/EC(Directive 2008/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criminal law)”를 채택하였다.⁷⁾ 2008년 11월 19일 채택된 동 지침은 그동안의

EU의 노력의 산물로서 27개 회원국 전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국내 형사처벌조치를 2010년 12월 26일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간 논의된 환경보호가 EU 회원국 사이에서 EU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형사제재’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의 이익보호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이익, 나아가 생태계 자체의 이익, 지구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고도의 ‘공익성’과 ‘객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 지침의 전문을 보면 EU는 TFEU 제191조 2항(EC조약 174조 2항)에 따라 높은 수준의 환경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환경범죄의 영향은 국경을 넘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처벌제도(일정액의 벌금)로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법률이 완전한 제 역할을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용한 형사적 처벌이 강력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형사적 처벌의 집행은 행정적인 처벌이나 민법상의 배상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성질이 질

7) 이러한 내용은 EU가 EU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형사적 제재에 관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전문 1~3단). 따라서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적 위해 행위에 대해 ‘더욱 억제력이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위해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EU차원에서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 5, 7단).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동 지침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전문 10단). 물론 동 지침은 ‘최소한’의 규율을 제공하며,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형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자유이다(전문 12단). 단, 그러한 국내 형사조치는 EU의 기본조약들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는 회원국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EC조약 제5조(현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5조)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EU차원에서 조치를 채택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전문 14단).

동 지침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보호의 대상, 환경범죄의 구성요건 및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의 목적은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내 ‘형법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제1조).

2. 용어 정의

동 지침은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동 지침의 목적을 위하여

- (a) ‘불법’이란 다음에 대한 위반·침해행위이다.
 - (i) EC조약에 따라 채택된 법과 부속서 A, 또는
 - (ii) Euratom조약에 따라 채택된 법과 부속서 B, 또는
 - (iii) 회원국의 행정법 또는 회원국의 적정한 권한에 의한 결정과 회원국이 효력을 부여한 (i) 또는 (ii)에서 언급한 공동체법
- (b) ‘보호야생동식물군’은
 - (i) 제3조(f)의 목적을 위해 다음을 포함한다.
 - 1992년 5월 21일 자연서식지와 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이사회 지침 92/43/EEC의 부속서 IV
 - 1979년 4월 2일 야생조류의 보전에 관한 이사회 지침 79/409/EEC 제4(2)조 규정
 - (ii) 제3조(g)의 목적을 위해 1996년 12월 9일 야생동식물군의 보호와 매매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 338/97의 부속서 A와 부속서 B를 포함한다.
- (c) ‘보호지역 안의 서식지’란 지침 79/409/EEC 제4(1)조 또는 (2)의 어떠한 종의 서식지로서 종 보호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어떠한 자연 서식지 또는 종의 서식지 지침 92/43/EEC 제4(4)조에 의해 보존을 위한 특정한 지역으로 구상된 지역
- (d) ‘법인’이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지위를

가진 법인을 말하며, 국가 또는 국가권한과 공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공 단체는 제외한다.

3. 범죄의 구성요건

동 지침은 용어 정의(제2조) 후,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을 각 항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제3조). 회원국은 다음의 행위를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성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 (a) 다량 물질의 배출, 방출, 유입 또는 이온 방사물을 대기, 토양, 수중에 방출하여 사람의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또는 대기의 질, 토양의 질, 수질, 동물과 식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b)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생, 처리의 운영에 대한 감독과 처리장의 사후관리(매매인 또는 중개인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한 행위를 포함)로써 사람의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또는 대기의 질, 토양의 질, 수질, 동물과 식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c) 폐기물의 선적은 2006년 6월 14일 유럽의 회와 이사회 규칙 1013/2006 제2조(35)의 범위 이내의 장소에서 투척하는 행위로 폐기물의 선적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량이 되, 일회의 선적인지 아니면 연계되어 수회에 걸쳐서 실행되었는지는 불문한다.

- (d) 공장의 운영이 위험한 물질로 수행되고 위험한 물질을 야외의 공장에 준비, 저장, 사용하여 사람의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또는 대기의 질, 토양의 질, 수질, 동물과 식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e) 핵물질 또는 다른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생산, 가공, 취급, 사용, 보관, 저장, 운반, 수입, 수출, 처분하여 사람의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또는 대기의 질, 토양의 질, 수질, 동물과 식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f) 보호야생동식물군을 포획, 파괴, 소유 또는 희귀종을 획득하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희귀종이 무시할 수 있는 수량의 경우와 종의 보존의 상황에서 무시할 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g) 보호야생동식물군 또는 희귀종의 거래, 그러나 희귀종이 무시할 만한 수량의 경우와 종의 보존의 상황에서 무시할 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h) 오존감소물질의 생산, 수입, 수출, 상점에 진열, 사용하는 행위
- 위와 같은 동 지침 제3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항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 범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 또는 동·식물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에 이르는 직·간접적 원인을 유발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하는 경우와 이러한 환

경오염 행위의 감독, 사후관리, 거래자로서 행한 행위의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 규정한 폐기물 선적의 출하 이외의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람 또는 동·식물에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등 환경오염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범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무허가 지역에서의 표본채취, 표본거래의 경우와 보호영역의 상당한 저하를 일으키는 행위, 즉 동·식물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범죄를 구성하며,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수출입 및 거래하는 경우에도 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제3조는 동 지침의 전문(5)의 환경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유해 활동을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4. 교사, 방조, 조장

동 지침은 제3조의 행위를 한 정범뿐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및 이를 조장한 경우에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5. 처벌

동 지침은 제3조와 제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회원국은 해당 범죄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

적’이며, ‘억제력 있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처벌은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다(제5조). 이는 EU가 환경보호를 위해 EU차원에서 회원국의 형벌의 ‘종류’와 ‘범위’까지 규정하여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법인의 책임 및 처벌

동 지침은 법인의 책임능력을 규정하여 법인 역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행한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1항). 그리고 법인은 범죄행위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2항). 그리고 법인의 죄를 범한 정범 또는 공범이 개인적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3항).

동 지침은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인의 처벌 역시 자연인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처벌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 있는’ 처벌 조치를 취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제7조).

7. 이행 및 발효

2008년 11월 19일 채택된 동 지침을 회원국들은 2010년 12월 26일 이전에 이행해야 하며, 회원국들은 동 지침과 관련되는 국내법 주요 규정에 관한 문서를 동 지침과 국내 규정 간의 상관 관계에 관한 자료와 함께 EU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제8조).

동 지침은 EU의 2차 법령의 발효와 마찬가지로 EU공보(Official Journal: OJ)에 게재되고 20일 후에 강제력을 가진다(제9조). 동 지침의 수반자는 물론 회원국이다(제10조).

III. 결언: 평가

동 지침은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 국제사회’에서 ‘환경책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는 ‘일반 국제사회’에서는 각 국가별 이해관계나 문제 해결방식의 차이로 쉽게 이룩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지침은 형사제재(형벌의 종류와 범위(형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다만 EU의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EU가 아직까지는 독립국가의 국내 형법과 같은 구체적인 처벌을 규정하지 못하여 주요 핵심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즉 유럽에서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의 입법 취지는 좋으나,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어느 정도는 규제력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하여 규제할 것인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동 지침 제5조에서 처벌에 관해서는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범죄의 행위자의 측면에서 볼 때, 자연인

과는 별도로 법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자유형으로는 불가능하고 재산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동 지침의 위반자들의 다수는 법인일 것이다. 그러나 법인은 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법인의 불법 행위의 감독자를 정역형에 처한다면 진정한 감독자가 처벌될 우려도 있다. 또한 법인은 대부분 이윤추구의 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벌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매각 대금으로 벌금을 충당하고 잔여액만큼을 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대표자에게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동 지침 이전의 지침에서는(물론 취소되었으나) 자유형과 재산형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었다.

어떤 정책이나 입법은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규정과 예외 없는 집행이 있어야 그 실효성을 갖는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데 비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다 강력한) 형사 제재나 민사 제재 및 환경법 전문법원의 확립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 지침은 EU에서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를 시도하고 있으나, 각 회원국의 상황(국익)에 맞는 국내 입법에 따라 다양한 형사적 처벌이 존재하다는 점에서 동 지침의 강력한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동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을 채택하여 이행하는 경우 동 사안에 대한 회원국의 재량을 매

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아 환경범죄뿐만 아니라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이므로 동 지침의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환경보호를 위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회원국들 외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비하여 적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경미한 처벌이 형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회원국들의 재량으로 인한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방지하고 동 지침이 의도하는 목적

을 달성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EU의 통합강도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형사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형벌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존재한다. 동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벌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법인에게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을, 그리고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에게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는 EU가 연방국가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 두 수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강사)